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96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임종득 · 서천호 · 나경원
박성훈 · 김예지 · 김기현
김용태 · 이진숙 · 임이자
강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 폭우 · 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 · 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 · 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 · 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제2항제5호·제6호·제8호의2에 따라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같은 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